

뉴욕 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활성화 지원 시범 프로그램

IEP 활성화 지원 참여에 대한 동의서

IEP 활성화 지원은 IEP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특수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 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CPSE)) 회의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는 데 동의하는 자발적인 절차입니다. IEP 조력자는 뉴욕 주 교육부의 훈련과 인증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이 조력자의 역할은 CSE/CPSE 구성원들이 적절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배치에 대한 IEP 권장 사항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인은 IEP 활성화 지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IEP 활성화 지원 과정 절차 및 지침을 수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1. 다음 학생에 대한 IEP 회의를 위해 IEP 활성화 지원 절차를 적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 선정된 IEP 조력자가 이 학생에 대한 IEP 회의를 진행할 때 본인의 역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해의 충돌에 대해 식별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부모의 요청 또는 학군의 판단에 따라, 학군은 회의를 위해 다른 IEP 조력자를 선택합니다.

3. 회의 진행 시 학생의 개인 정보를 IEP 조력자와 공유하는 데 동의하고, IEP 조력자는 이러한 정보를 회의 밖에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4. IEP 조력자는 사용한 모든 서면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안전하게 파기하고 학군에 제공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5. IEP 조력자는 법적 대리인, 상담가, 변호사, 판사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IEP 권장 사항은 IEP 조력자가 아니라 위원회(CSE/CPSE)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6. IEP 조력자는 IEP 개발 과정에 대한 후속 절차에 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없으며, 기타 모든 행정적, 사법적 또는 교육적 절차에 IEP 조력자를 증인 또는 조언자로 요청할 수 없고, 어떠한 당사자나 참여자도 이 회의에 따라 IEP 조력자가 작성한 어떠한 기록, 내용 또는 기타 자료도 향후에 소환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7. IEP 활성화 지원에 참여한 어떠한 당사자도, 이 동의서에 따라 진행된 IEP 와 관련해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나 누락에 대해서든, 어떠한 당사자나 참여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8. IEP 활성화 지원은 학부모나 학군이 의견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회의, 중재, 공식적인 민원 절차 또는 적법 절차 심리를 추진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IEP 활성화 지원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부모: (정자체로 이름 기입) _____

부모: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 (정자체로 이름 기입) _____

부모: (서명) _____

날짜: _____

학군 담당자: (정자체로 이름 기입) _____

학군 담당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IEP 조력자: (서명) _____

날짜: _____